



2023.11.06.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82호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김태경(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82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11월 6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김태경(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CONTENTS

1. 문제제기: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의 ‘증언’	06
2. 원폭피해자와 과거와의 대화	10
3.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에 원폭피해자 위치시키기: 증언의 구축, 보존과 향후 국가적 추모기념의 의미	15
4. 원폭피해자 사회통합과 미래의 평화구축: 정책, 입법 시사점	18

■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 이머징 시티즌은 미래의 이슈, 트렌드를 먼저 경험하는 시민, 스스로 이미 겪고 있는 미래적 문제에 대한 대안적 시각, 지평을 제공하는 시민으로 정의

- 원폭피해자는 핵재난이라는 미래에 우려할 수 있는 가장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을 몸으로 직접 체험한 인류라는 점에서 미래 위험에 대한 중요한 경고자
- 1945년 8월 미국의 원폭 투하에 따른 피폭을 경험한 피폭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존재한 일본인, 조선인, 그리고 중국인, 연합군측 포로임
- 이 중 조선인은 피폭자의 10% 이상을 차지했고 당시 조선인이 위치한 역사 특수적 조건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짐

■ 원폭피해자 '인정 투쟁'의 현주소

-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통해 전쟁수행능력을 포기한 '평화국가'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고수해왔고 원폭 피해자의 존재는 평화국가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를 점함

- 특히 원폭피해자는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대중적 언설과 함께 평화국가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국가서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 반면 한국에서 원폭피해자는 냉전, 독재 시기부터 현재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존재로, 1990년대 식민지기 전쟁피해자 관련 다양한 증언, 배·보상운동이 진행될 때 다른 전쟁피해자들과도 일정한 차이를 보임

- 일본 원폭피해자가 국가적 서사, 관련 보존 및 기록 노력, 글로벌 반핵운동에서 특별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적
- 일본에 이주, 징용·징병 과정에서 피폭된 조선인들은 한반도 귀환 후 사회적 무관심과 국가적 방치, 가난과 차별 등 이중, 삼중의 수난을 살게 됨
- 국내정치에서 방치, 소외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일본 원폭2법 체계 하 피폭자들에 대한 복지를 글로벌 피폭자로서 쟁취하는 법정투쟁을 통해 일본 '히바쿠샤'(被爆者, 피폭자)로서 인정받는 특유의 '인정 투쟁'을 전개함
- 일본군 위안부 등 식민지기 전쟁피해자들과 달리, 원폭피해자는 일본에 관련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 원폭법의 적용을 재외 피폭자에 확대하는 논리로, 장기간 소송투쟁을 거쳐 승소한 예외적 사례

■ 원폭피해자와의 과거와의 대화와 기억의 정치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대화 템플릿에 기초해 원폭피해자와 미래대화를 수행하는 대신 기존에 침묵된 이들의 과거에 대한 증언에 초점을 맞춤

- 미래대화에서 진행하는 미래전망, 미래선호 조사 대신 이들의 인정 투쟁의 역사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는, 일종의 과거와의 대화를 진행함

○ 원폭피해자들의 기억에 대한 조명과 이들을 포괄하는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 형성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정 및 역사적 위치를 찾아주는 한편 미래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한반도 전략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 피폭 78년을 맞는 2023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해방, 분단, 냉전, 민주화 등을 겪어온 한국 현대사에서 여전히 비주류, 주변화된 위치에 머물러 있음
-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기억을 통합하는 한국, 한반도의 정체성 형성은 식민, 전쟁, 분단, 패권 등 국제질서의 주요 개념,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될 것임
- 전후 망각이 강요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기억을 듣는 것, 기억하기를 통해 주류 한국, 한반도 사회 집단기억에 자리를 잡지 못한 원폭피해자들을 통합하는 것은 미래 한반도에서 인권, 화해, 평화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 한국인 원폭피해자협회 추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현재 생존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834명으로 평균 83.3세 고령을 보임

- 원폭피해 증언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서 향후 피폭의 기억 투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 계류중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명시하는 바, 현재 원폭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추모기념 사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역사적 함의를 가짐
- 국가가 원폭피해자 수난에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관료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포괄하는 인간성,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원폭피해자 추모기념 사업을 바라보는 인식 프레임의 전환이 필수적

1. 문제제기: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의 ‘증언’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 이 브리프는 ‘이머징 시티즌’과의 대화로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겪어온 난관, 그들의 현재적 투쟁에 대한 증언을 청취한 결과로부터 미래 평화구축에 대한 교훈을 추출함
 - 원폭피해자와의 대화는 국회미래연구원 <국민과 미래대화 연구>에서 수행하는 ‘이머징 시티즌’과의 미래대화, 수시 과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과의 미래대화>의 일환으로 수행함
- 이머징 시티즌은 현재는 비주류, 주변화된 사회집단이나, 미래에 이들과 같은 집단이 크게 확산되거나 향후 전망되는 위험을 미리 경험하는 집단을 의미함
 - 이머징 시티즌과의 미래대화는 이머징 시티즌의 미래 전망, 미래 선호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기획함
 -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대화는 시민들이 전망하는 복수의 미래 시나리오와 함께, 미래 선호를 토론하는 소그룹 대화 형식으로 진행됨
- 이번 원폭피해자와의 대화는 미래대화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보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이들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증언’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수행함
 - 왜? 미래대화 형식에서 차용하는 미래전망, 미래선호를 토론하기 전에 ‘전사’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집단의 생애사, 개인사를 듣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함
 - 어떻게? 일본과 한국의 원폭피해자 투쟁, 재현 관련 선행연구를 폭넓게 참고하면서 합천에 주로 거주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후손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표 1> 원폭피해자 및 후손 인터뷰

일시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2023.5.28 합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피해자 투쟁 연혁 한국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 요구
2023.8.9 나가사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피해자 투쟁 역사 원폭피해자 참여 반핵평화 글로벌 시민연대
2023.9.26 합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피해자2세환우회	한국원폭피해자 투쟁 함의 한국원폭피해자2세 문제와 특별법 개정 원폭피해자 증언 및 반핵평화운동 항방

원폭피해자와 ‘시민권’

- 원폭피해자의 경우 ‘머징 시티즌’의 지위를 말하기 전에 ‘시민권’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 현재까지 이어진 문제제기를 지적해야 함
 - 탈냉전 민주화 시기에 이르러서야 한국사회에서 원폭피해자 투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함
 - 한국인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제정된 2016년에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오랜 ‘인정 투쟁’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당초 입법 취지였던 후손은 원폭피해자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특별법에 명시한 추모기념 사업이행은 미완의 상태임
 - ‘한국인’원폭피해자의 문제는 한국정부, 한국사회의 책임이라기보다 일본정부, 일본사회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이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무관심과 무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부상한 식민지기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배·보상 투쟁에서 일본에 관련 국내법이 존재한 원폭피해자의 경우, 여타 피해자들과 차별화된 일본정부에 대한 재판투쟁과정 및 지원 체계가 자리잡게 됨
 - 일본 법정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복지적 수혜를 허용한 전쟁 피해자는 원폭피해자, 한센병 환자뿐임
 - 두 범주는 관련 일본 국내법이 존재하는 사례로, 일본 국내법이 전시 재외 피해자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정부의 의료 지원 및 수당 지급이 이뤄짐(김재형·오하나 2019; 광귀훈 2013)
 -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1970년대 손진두 소송, 1990년대 말 광귀훈 소송투쟁 등을 거쳐 일본 원호법에서 재외 피폭자로 인정되어 일본 법체계상 ‘히바쿠샤(被爆者)’로 편입, 수혜 자격을 획득함(양동숙 2018)
 - 일본 ‘히바쿠샤’ 인정의 사각지대에 한반도로 귀환한 조선인 피폭자 중 재북 피폭자가 존재함: 북일 국교 부재를 이유로 일본정부는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양동숙 2019)
 -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인정은 일종의 ‘초국적 시민권’을 드러내는 한편(박경섭 2009), 일본정부의 관료제적 통과외례에 종속되는 편입과정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역사적 정체성, 즉 이주, 식민, 강제징용·징병, 피폭 등 복합적 차별과 수난의 역사는 은폐되는 효과가 나타남(김원 2017; 문경희 2018)
 - 일본 ‘히바쿠샤’는 일본 법체계에서 원폭법 제정으로 다른 전재자와는 차별화된 지위를 점함
 - 피폭자가 상징적 위치를 점하는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특유의 국가적 희생서사는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함(권혁태 2009)
 -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확대된 일본 ‘히바쿠샤’ 복지란 일본정부가 부여하는 관료제적 인정의 제약 안에서 허용되며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과거 식민, 전쟁의 주체인 일본 정부당국에 복지 수혜를 신청, 관료제적 승인에 좌우되는 아이러니에 직면함(오은정 2014)

1) 일본사회에서 피폭자(히바쿠샤)는 1945년 8월 원폭피폭된 희생자들을 의미하며 원폭법에 명시한 기준을 따름. 소위 ‘검은비 소송’이 최근 승소하면서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후 내린 ‘검은 비’를 맞은 피폭자들을 피폭자로 인정하는 등 피폭자 규정은 현재까지 일정한 변화를 거쳐왔음. 장기간에 걸친 한국인 피폭자들의 재외 피폭자 인정 투쟁은 일본 내 피폭자 규정 변화와 결부된 대표적 변화임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 평화구축

- 평화구축(peacebuilding)이란 갈등 관리를 넘어서는 '갈등 전환'의 과정을 통해 분쟁 재발을 예방하는 한편 일상 차원에서 화해 정착을 포괄하는, 평화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총체적 노력임
 - 갈등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은 갈등의 종식이나 관리를 통한 폭력 부재의 '소극적 평화' 대신 정의 구현, 불균등한 힘의 균형을 통한 '적극적 평화'를 목표로 함
 - 갈등 전환의 핵심은 직접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 폭력·문화적 폭력에 대응하며 약자의 강화 혹은 강자의 약화, 체제 변화와 같은 중기 과정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위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는 데 있음

<표 2> 갈등 해결의 유형(갈등 해결, 갈등 관리, 갈등 전환)

	갈등 해결		갈등 관리		갈등 전환	
	비강제적	강제적	비강제적	강제적	비강제적	강제적
평화의 정의	갈등 종식		파괴적 갈등의 통제 "소극적 평화"		정의, 권력의 균형 "적극적 평화"	
중기 목표	갈등 회피 문제 해결 항복의 교환	적의 괴멸 혹은 패퇴 승리	규범 체계의 확립		약자의 강화	강자의 약화
			제재	제재X		
			고정관념, 편견, 배제, 폭력 회피 타협		체제 변화 조직 권력에 대한 대립	
			권력공유	권력유지		
사용 수단	논쟁	분쟁 협박 협상(+위협) 무력사용	논쟁 타협 협상(+양보) 중재 의례(주사위, 동전던지기) 자발적 조정	협상(+위협) 경찰력 (법 집행) 투표 강제 강제적 조정	교육 도덕적 설득 시위 각각 분리된 규범 비협조	파업 보이콧 분쟁 사보타지 위협
					단식투쟁	
					타협 협상(+양보)	무력 타협 협상(+위협)

* 출처: Brunk 2012, 22

- 원폭피해자의 궁극적 미래 선호라 할 반핵평화의 실현은 세계적 차원에서 핵무기 전면 금지의 공약 확립이라는, 현재 국제질서상 획기적 변화를 전제하는 매우 장기적인 의제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술핵 위협 증대, 북한의 핵 독트린 변화와 남북관계 교착, 대만해협 긴장 고조와 같은 최근 사태변화는 핵-재래식 무력을 결합한 전략적 대응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음
 - 중장기 미래 평화구축 의제로서 핵 없는 평화를 상징할 때 유일하게 핵 참화를 직접 경험한 인류인 원폭피해자들의 실존, 증언은 필수불가결한 윤리적 위상을 점함
 - 미래 핵재난, 원전사고 등 현대적 위험의 심화, 복합적 안보 위기의 우려는 (핵)국가 중심 전후 국제질서 현실에서 소외된 글로벌 피폭자들의 목소리, 그들의 선호와 대안적 요구에 귀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한일 원폭피해자들은 2017년 7월 채택, 2021년 1월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TPNW)²⁾의 세계적 확산 및 핵국가들의 참여를 중용하며 초국적 차원의 반핵평화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는 글로벌 시민연대를 구축해왔음

2)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은 가입국에 핵무기 제조와 보유, 배치 등을 불법화하고 핵무기 사용과 실험으로 발생한 희생자들을 돕도록 규정함. 핵보유 예외를 인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과는 달리 핵무기 자체를 비인도적인 불법으로 간주함. 2021년 1월 TPNW 발효 이후 TPNW 서명국 첫 회의는 2022년 6월 개최되었고 2차 회의가 오는 11월 말에 개최될 예정임. 2017년 ‘핵무기폐지 국제운동’(ICAN)은 반핵평화 글로벌연대를 통해 TPNW 성립을 주도한 공로로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함. ICAN은 TPNW 체결 과정에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핵무기 위험성에 대한 주의 환기와 관련해 원폭피해자들의 증언을 중요한 의제, 운동 동력으로 삼음

2. 원폭피해자와 과거와의 대화

원폭피해자는 누구인가

- 1945년 8월 6일, 8월 9일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당시 현장에서 피폭을 당한 원폭피해자는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측 포로 등 다양한 민족, 국적 구성이 존재함(곽귀훈 2002)
 - 1945년 당시 약 237만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일본 인구(7500만명 추산)의 3.16%를 차지함 (키무라 2018)
 -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 등 군수시설, 탄광이 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조선인들이 징용, 이주 등으로 다수 유입됨

<표 3> 전체 피폭자 현황

지역	전체(일본)		한국인				
	피폭자	사망자	피폭자	사망자	생존자 잔류자		
					계	귀국자	잔류자
히로시마	420,000	159,283	50,000	30,000	20,000	15,000	5,000
나가사키	271,500	73,884	20,000	10,000	10,000	8,000	2,000
계(명)	691,500	233,167	70,000	40,000	30,000	23,000	7,000

* 출처: 한국원폭피해자 원호협회 현황보고서(1972년 4월); 정용하 2019, 9에서 재인용

- 1945년 조선인 피폭자는 히로시마에 5만여 명, 나가사키에 2만여 명으로 총 7만여 명이 존재했고 피폭에 의한 사망자는 총 4만여 명, 생존자 중 일본 잔류가 아닌 한반도로 귀국한 수는 2만 3천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표 3])
 - 1945년 전체 일본인구 중 3.16%를 차지한 조선인 중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율은 10%에 달함
 - 피폭 사망자 기준 히로시마는 전체의 38%, 나가사키는 전체의 27.2%가 사망자였던 반면 조선인 사망자는 각각 57%, 50%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피폭사망률을 보임
 - 한편 일본 내무성 경보국 통계는 히로시마 조선인 수를 81,862명, 피폭 관련해 총 피폭자 7만 명 중 사망자 3만 5천 명, 생존자 3만 5천 명, 나가사키에서는 총 피폭자 3만 명 중 사망자 1만 5천 명, 생존자 1만 5천 명이라 추산함(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5; 이치바 2003)
 - 히로시마-나가사키 생존자 중 4만 3천 명이 귀국하고 7천 명이 일본에 남았다고 기록함

- 2023년 4월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1967년 설립)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는 1,834명으로 평균 83.3세 고령을 보임(대한적십자사 2023)
-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국내 피폭자 대부분은 히로시마 피폭자로, 피폭자 등록을 위한 조건 충족 및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히로시마 이주-귀환자들이 다수를 차지함(보건사회연구원 1991; 오은정 2018a)³⁾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1세 규모를 바탕으로 원폭피해자 2세의 규모는 최소 1만 2천 명~1만 5천 명으로 추정되지만 미등록 원폭피해자가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실제 2세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높음(정연 외 2020, 이나경·정연 2022)

과거와의 대화: 원폭피해자 ‘인정 투쟁’의 역사

- 비키니섬 수폭실험 사건 이후 반핵평화시민운동 발흥에 따라 일본은 1950년대 원폭법 제정을 통해 ‘히바쿠샤’(被爆者)에 대한 의료복지를 시작
 - 1945-1948년 GHQ 점령기 일본에서는 프레스코드 하에 ‘원폭’ 관련 키워드 출판 검열을 실시함(오성숙 2022, 186)
 - 1954년 비키니섬 수폭실험에 의한 ‘제5후쿠류마루호’ 어부 23인 피폭사건 이후 일본 내 반핵평화운동 물결이 확산되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연합군측에 전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건에서 시민사회는 일본정부에 보상을 요구함
 - 1956년 일본피폭자단체협의회(피단협)가 발족하고 피폭자들의 사과, 배상 요구가 지속됨
 - 일본은 국가보상이 아닌 사회복지 차원에서 1957년 원폭의료법⁴⁾, 1968년 원폭특별법⁵⁾을 제정, 1994년에는 피폭자원호법으로 일원화함
 - 일본 피폭자 정의: ①원폭투하 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시 등 일정 구역 내에 있던 자, ②원폭투하 2주 이내에 일정 구역 내에 입회한 자, ③원폭투하 시 또는 후에 신체에 방사능의 영향을 받을 사정 하에 있던 자, ④당시 ①~③에 해당하는 자의 태아였던 자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자⁶⁾

3) 원폭협회 자료는 협회에 가입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 용이하고 기회비용이 적은, 즉 일반이주 귀환자들, 특히 히로시마에 일제강점기 이주하고 친인척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있던 합천 출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줌. 상대적으로 강제동원된 이들의 원폭협회 회원 가입 비율이 낮은 것을 실제로 강제동원이 적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강제동원된 이들은 피폭자 증빙 관련 정보제공의 어려움이 많고 일반 귀환이주자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순 비교가 어렵기 때문임(오은정 2018a, 178-179)

4) 원자폭탄피폭자의 의료등에 관한 법률

5)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6)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原子爆彈被爆者に対する援護に関する法律) 제1조, 제2조(이지영 2017, 62)

- 냉전 독재 시기 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자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일본 시민사회와 연결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일본 ‘히바쿠샤’로 인정받는 법정투쟁을 발전시킴
 - 1950년대 한일 협상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원폭피해자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원폭피해자는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문제와 함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김승은 2012)
 -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한일 정부의 무시, 배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197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개칭)를 설립하는 한편 일본 시민사회에 원호를 요청하고 한일기본조약 체결 전후 시민연대 토대를 구축함
 - 1970년대 국내 피폭자들의 밀항, 도일 배경으로 손귀달, 손진두 소송투쟁 결과, 일본인이 아닌 재외 피폭자 피폭수첩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일본 후생성은 ‘통달 402호’를 통해 이들이 일본을 벗어나면 피폭자 관련 복지혜택을 수혜할 수 없게 조치함(김지영 2017, 19)
 - 손진두 ‘수첩재판’은 1974년 후쿠오카 지방법원 승소, 1978년 최고심 승소
 - ‘재한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발족 등 일본 시민사회,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 국내 피폭자운동(귀환동포)의 네트워크 구축됨(오은정 2018b)
 - 한일 피폭 시민연대를 바탕으로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일본 원폭법 적용은 2002년 최종 승소 판결을 성취했고 한국의 경우 적십자사가 2003년부터 절차를 실행함
 - 광귀훈이 주장한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 논리는 2001년 지방법원, 2002년 오사카고등법원 승소에서 확인되었고 이후 일본정부 항소 단념으로 최종 승소
 - 이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피폭수첩 교부 과정에서 ‘진짜’ 피폭자를 증명해야 하는 행정관료제적 절차를 통해 일본 복지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됨(오은정 2014)
- 관료제적 통과의를 통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인정이 가능해졌으나, 일본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쟁 책임에 따른 보상을 인정한 것은 아님
 - 일본 내 피폭자들의 국가보상에 대한 요구에 대한 일본정부 입장은 1990년대 이후 변화했으나, 근본적으로 종래의 ‘수인론’⁷⁾에서 완전히 변화한 것은 아님
 - 피폭자들이 요구해온 일본정부의 국가보상 인정은 여전히 군인·군속 등 국가가 고용한 피해자에만 해당되며 피폭자는 “국가보상적 배려”라는 법적 용어로 정리됨(오은정 2014; 양동숙 2019)
 -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의료 수혜는 그 자체로 한일 피폭자운동, 일본 시민사회 연대가 이끌어낸 일본정부에 대한 오랜 소송투쟁의 전취물이나, 미국정부의 원폭투하, 일본정부의 전쟁 발발, 강제징용·징병 책임, 냉전, 독재 하 한국 정부의 방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면을 가짐
 - 예외적으로 한일협정 체결 전후부터 국내 피폭자운동과 연계가 시작된 일본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거사 반성 노력, 연대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7) 수인론(受忍論): 샌프란시스코체제 하 일본정부는 전재자(戰災者) 전체에 그냥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요구함

<표 4> 한인 피폭자의 재판투쟁 일지

제소자	재판종류	재판소 (제소일)	판결일자	판결/국가배상	비고
손진두	수첩교부신청 각하취소소송	후쿠오카 (1972.10.2)	1974. 3.30.	승소	2014. 8 사망(후쿠오카)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 최초제기
			1975. 7.17.	승소	
			1978. 3.30.	승소	
신영수	수첩교부신청	동경 (1974. 7.22.)	1974. 7.25.	교부(제1호)	
정철선	건강관리수당	히로시마	1976. 5.	지급인정	한국인 피폭자에게 최초인정
김순길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1992. 7.31.)	1997.12. 2.	패소	402호 통지 위법 확정 일본 상고 포기
			1999.10. 1.	패소	
동지회 회원 6인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1995.12.11.)	1999. 3.25. 2005. 1.19. 2007.11. 1.	패소 승소 승소/패소	병합재판, 2007.11.1 원고46인중 생존자15인, 강제연행에 대한 국가배상은 제척기간경과, 한일청구권을 이유로 원고패소
동지회 회원 40인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1996. 8.29.)			
곽귀훈	피폭자원호법 재판	오사카 (1998.10. 1.)	2001. 6. 1.	승소/패소	국외거주자 최초수당지급 판결 일본정부 상고포기
			2002.12. 5.	승소/패소	
			2002.12.18.		
이강녕	피폭자원호법 재판	나가사키 (1999. 5.31.)	2001.12. 6.	승소/패소	2003.3.1 <402호 통지폐지> 수당지급주체를 도도부현으로 판결
			2003. 2. 7.	승소/패소	
			2006. 6.13.	승소/패소	
피폭자 6인	한국미쓰비시 재판	한국부산 (2000. 5. 1.)	2007. 2. 2.	패소	시효소멸로 판결
이재석	국가배상재판	오사카 (2001.10. 3.)	2003. 3.20.	승소/패소	원고/피고 상고포기
최계철	수당재판	나가사키 (2004. 2.22.)	2004. 9.28.	승소	피고 상고
			2005. 9.26.	승소	
	시효재판	나가사키 (2004. 5.18.)	2005.12.20.	승소/패소	재역전 승소로 최초로 국가배상명령
			2007. 1.22.	역전패소	
			2008. 2.18.	재역전승소	
	장례비각하 취소소송	나가사키 (2004. 9.21.)	2005. 3. 8.	승소	나가사키 시 상고 단념
2005. 9.26.			승소		

제소자	재판종류	재판소 (제소일)	판결일자	판결/국가배상	비고
이상엽	수첩재판	히로시마 (2005. 6.16.)	2006. 9.26.	패소	2007.4 사망(가족승계)
			원고 항소	항소 후 미확인	
주창윤	수당재판	히로시마 (2005. 6.16.)	2006. 9.26.	패소	원고 항소이후 상황 미확인
				항소	
재한피폭자 7인	수첩재판	오사카 (2006. 8. 1.)	미확인	2008.2. 생존자 2643명, 수첩취득자 2420명 2018년 3월 현재 대한적십자에 등록된 국내원폭피해자 2344명	
정남수	수첩재판	나가사키 (2007. 2.21.)	미확인		
이흥현 씨 외 2인	피폭자 원호법 재판	오사카	2015. 8.	일본 최고 재판소 확정 판결	재외국민 치료비 전액 보상판결

* 출처: 정용하 2019, 18.

- 1970년대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루이지 않은 원폭피해자에 대해 ‘국내문제’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본정부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해 한일간 협상을 최소적으로 진행함(김승은 2012)
 - 2005년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이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배제된 위안부, 원폭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진행
 -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보상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 한일간 해석상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 판결⁸⁾
 -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배제된 원폭피해자의 ‘국내문제’적 성격, 즉 일본에 대한 청구권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한일 시민사회의 일본정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 압력, 손진두 수첩재판 과정을 주시하며 일본에 인도적 지원을 요구했으나 1978년까지 기존 대일경제협력사업 축소를 우려해 한일교섭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함
 - 일본은 1965년 이후 시종일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법률론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
 - 1978년 손진두 재판 최고심 승소 이후 한국은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가 한국인피폭자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명분을 들어 청구권협정의 한계를 주장했으나, 10년 이상 지연된 관련 교섭 결과 인도적 지원 중 최저·최소 수준인 ‘환자의 도입치료’만 성사됨

8) 「2008헌마648-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2011.8.30

3.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에 원폭피해자 위치시키기: 증인의 구축, 보존과 향후 국가적 추모기념의 의미

한국인 원폭피해자와의 과거와의 대화와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

- 한국인 원폭피해자와의 과거와의 대화 결과, 해방 이후 한국, 한반도 현대사에서 원폭피해자들에 구조적으로 강요된 망각을 확인하게 됨
 - 피폭 78년을 맞은 2023년 현재에도 국내 원폭피해자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의 배제로 '국내문제'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가적 외면, 방치가 낳은 결과임
 - 더불어,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구호, 보상 요구가 일본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연대를 배경으로 일본정부에 대한 직접적 소송투쟁의 형태로 전개되면서 한국인피폭자들이 일본사회에 던진 파장과 대조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뒤늦게 알려지거나 여전히 관련 정보에 어두운 현실이 존재함

우리 한국 원폭피해자는 아무도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도 모르고.

-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현재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에 통합된 자리를 허용받고 있는가의 문제임
 - 1990년대 재외 피폭자들이 모두 연대한 한일 및 국제적 반핵평화 시민연대 결과, 재외 피폭자로서 한국인 피폭자들은 일본 원폭법의 확대 적용을 통해 일본정부로부터 수혜를 획득함
 - 2002년 광귀훈 소송 승소 및 이후 지속된 일본정부 상대 소송투쟁 결과, 재외 피폭자에 일본 피폭자와 동등한 권리로 의료복지 등이 인정됨
 - 그러나 장기간 한국, 한반도 현대사에서 그 존재 자체가 '침묵', '방치'된 원폭피해자의 위치는 실질적으로 변화된 바가 없으며 이는 피폭자들이 일본 법정투쟁을 통해 일본 '히바쿠샤'로서 인정 투쟁에 승리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

원폭피해자 망각과 한국, 한반도 정체성의 한계

- 1945년 8월 원폭피폭될 수 밖에 없었던 조선인들이 위치한 역사 특수적 조건 때문에 사실상 일본과 한국의 피폭자를 동일선상에서 말하는 것의 한계는 분명함(허광무 2004)
 -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이주와 식민, 강제노동 등 구조적·인종적 차별, 원폭피폭, 귀환과 이후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가난과 질병의 수난사는 한국, 한반도 현대사에서 이들에 대한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줌
 - 일본 '히바쿠샤' 인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기억의 통합,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장기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요구됨
- 전후 망각이 강요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기억을 듣는 것, 기억하기를 통해 한국, 한반도 집단기억에 자리를 잡지 못한 원폭피해자들을 통합하는 것은 미래 한반도에서 인권, 화해, 평화를 준비하는 데로 연결되는 과제로 생각할 수 있음
 - 집단의 문화적 기억은 과거에 대한 선택적 취합을 통해 구성, 재현하는 '기능기억', 그와 경쟁,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에 가까운 '저장기억'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Assmann 2011)
 - 한국 원폭피해에 대한 집단기억은 '망각하기'에 가까운 것으로, 원폭을 통한 승전과 탈식민 해방이라는 신화, 이데올로기적 기억에 가려 원폭피해자들의 목소리, 원폭을 포함한 그들의 생애를 둘러싼 기억은 한국사회에서 광범하게 유통되고 재현되는 유의미한 위상을 차지하지 못함
 -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생전에 원폭후유증 치료, 일상의 지원에 대한 구호라는 생존투쟁에 직면했다는 과거만이 아니라 이들의 생애사가 여전히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에서 통합적으로 포괄하지 못한 현실로부터, 피폭자 개인은 물론 한국, 한반도의 정체성에 분명한 한계를 형성하며 미래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인권, 평화, 통합 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 언어를 스스로 제약해온 문제로 비판할 수 있음

(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가) 2003년도부터 연구를 했던 것이 2009년도 하고는 연구를 하기를,

세계비핵평화공원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공원을 생각한거지, 처음에 비석을 하려고 돈을 모았던 건데 합천을 위해서. 이제 세계평화공원, 비핵평화공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폭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원폭 세계에서

주최국이 돼야 하는데 일본은 전쟁한 나라이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은 히로시마 가면은 평화도시라고 세계 정상들이 8월 6일 40-50명씩 오고

4만 명 5만 명 오는데 왜 한국엔 조용하냐 말이야.

그 사람들이 합천을 봐야 되겠다. 합천으로 불러야 되겠다.

일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합천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일본은 전쟁을 한 나라고, 우리나라를 인정해 주는 거다.

증언자들의 현재적 요구로서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 이슈

- 현재 원폭피해자들은 2·3세대들의 인정 및 실질적 지원 요구와 국가 추모기념사업 시행을 통해 사회 전반적 인식과 역사적 평가 제고를 요구함
 - 원폭피해자법(제14조 기념사업)은 국내 원폭피해자 추모,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추모묘역 및 위령탑, 그 외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재 추진일정이 본격화되지는 않음
 - 원폭피해자협회는 장기간에 걸친 국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물이해를 극복하고 후대를 위한 추모·교육의 장으로서 비핵평화박물관 등 건립을 통해 합천을 비핵·평화·정의에 대한 담론, 실천을 발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음
 - 원폭피해자협회는 아직 한 번도 실행된 적 없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을 통해 공식적 국가 서사에 이들의 역사적 위상, 기억이 통합되기를 호소함

4. 원폭피해자 사회통합과 미래의 평화구축: 정책, 입법 시사점

21대 국회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입법 노력⁹⁾

- 현재 계류중인 한국인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원폭피해자 정의를 원폭피해자 후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음
 -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원폭피해자2세환우회 등은 피폭자 범위에 2-3세 후손을 포함시키는 입법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
 - 2016년 한국인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 당시 후손을 포함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개정노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은 현행법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정안에 의무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표 5>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국회 발의 추이

제안자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강기정의원등 79인	172053	원자폭탄피해자의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	2005-06-16	2008-05-29	임기만료 폐기
조승수의원등 23인	172353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05-08-04	2008-05-29	임기만료 폐기
유기홍의원등 51인	172965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일본군 위안부·사할린억류자·원폭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 촉구결의안	2005-10-18	2008-05-29	임기만료 폐기
조진래의원등 103인	180225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08-11-25	2012-05-29	임기만료 폐기
조진래의원등 13인	1813641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대일 배상청구권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2011-10-27	2012-05-29	임기만료 폐기

9) 21대 국회 계류중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사회통합을 위한 입법 의제, 방향에 대해서는 후속간행될 <국회미래의제> 브리프에서 다룰 예정이다

제안자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김정록의원 등 10인	190305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2-12-07	2016-05-19	대안반영 폐기
이학영의원 등 17인	190391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3-02-28	2016-05-19	대안반영 폐기
이재영의원 등 11인	1905013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3-05-20	2016-05-19	대안반영 폐기
김제남의원 등 11인	1905421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3-06-12	2016-05-19	대안반영 폐기
(보건복지위 원회) 위원장	191869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2016-05-18	2016-05-19	원안가결
김상희의원 등 17인	201487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8-14	2020-05-29	임기만료 폐기
김종희의원 등 10인	201568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20	2019-04-05	원안가결
김태호의원 등 12인	211050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6-02		소관위 심사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년 10월 15일 검색

핵재난과 일상의 지속, 후대를 위한 기억투쟁

- 여전히 상존하는 핵전쟁의 위협, 원전사고 사례를 고려할 때, 핵재난을 몸으로 체험한 원폭피해자는 최악의 미래를 이미 경험한 인류로 볼 수 있음
 -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는 인류 유일의 핵참화를 경험한 이들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반핵평화의 직접적 상징임
 - 일본 시민사회는 현재 11만 명대로 줄어든 원폭 1세대의 고령화를 우려하며 더 이상 증언자가 없는 반핵평화운동, 평화국가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적 변화를 우려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현재 1800명대로 떨어진 원폭피해자들 이후의 미래에 대한 담론·실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전후 장기간 소외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존재, 증언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인정투쟁’을 통해 동아시아,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평화구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대안적 성찰을 제공할 수 있음
 -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이주와 식민, 강제동원, 피폭과 해방 이후 구조적 차별과 배제를 몸에 새긴 존재로 이들의 증언은 기존의 국제질서, 한국사회가 통용해온 정의, 평화, 인권에 대한 심중한 문제제기를 촉발함
 - 이들과의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평화구축을 위한 일종의 오답노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현재적 과제는 아직까지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 정체성에 그 자리를 허용받지 못한 원폭피해자들의 기억을 인정, 통합하는 것임
 -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수난을 기억하고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에 이들의 기억, 서사를 통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의 평화구축에 중요한 교훈을 확립하는 의제임

참고문헌

- 곽귀훈. (2002). 나의 시점, 아사히 신문, (2월 5일).
- 곽귀훈. (2013).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민족문제연구소
- 권혁태. (2009). 히로시마/나가사키의 기억과 유일피폭국의 언설, 일본비평 1
- 김승은. (2012). 재한(在韓)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교섭태도(1965~1980), 아세아연구 55(2)
- 김원. (2017). 밀항, 국경 그리고 국적 - 손진두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62
- 김재형·오하나. (2019). 이행기 정의를 통해 본 일본 한센인 운동, 1946~2009, 사회와 역사 121
- 문경희. (2018).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일제강점기 합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 Homo Migrans 19
- 박경섭. (2009). 조선인원폭피해자와 초국적 시민(권), 현대사회과학연구 13
- 양동숙. (2018).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의 결성과 원수폭 금지운동, 기억과 전망 38
- 양동숙. (2019).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피폭자협회'의 결성과 북일 원폭피해자의 교류·지원활동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78
- 오성숙. (2022). 문화권력과 서발턴 피폭자 문학: 전후 원폭, 원폭문학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34
- 오은정. (2014). 관료제적 문서주의 속에서 기록과 기억: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피폭자건강수첩 취득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7(2)
- 오은정. (2018a). "완전 왜년이지, 왜년으로 살았제": 히로시마 재일조선인 1.5세·2세의 귀환 서사와 해방공간, 한국문화인류학 51(2)
- 오은정. (2018b).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에서 한·일 시민연대의 사회문화적 토대와 그 변화, 기억과 전망 39
- 이나경·정연. (2022). 끝나지 않은 고통: 원폭피해자 2세의 건강 수준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2(4)
- 이지영. (2017). 한·일 원폭피해자의 고통의 감정 연대와 균열, 한국민족문화 62
- 이치바 준코. (2003).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 정연 외. (202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육구 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용하. (2019). 일본의 한국인피폭자 차별과 책임: 피폭자들의 재판투쟁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2
- 키무라 아키라. (2018). 원폭투하문제의 공통인식, 한국민족문화 69
- 한국원폭피해자 원호협회. (1975). 현황보고서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5). 한국 피폭자의 현황
- 허광무. (2004).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제연구와 문제점, 한일민족문제연구 6

Assmann, Aleida. (2011). *Cultural Memory and Western Civilization: Functions, Media, Arch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unk, Conrad. (2012). "Shaping a Vision: The Nature of Peace and Conflict Studies," In Webel, Charles and Jorgen Johansen eds. *Peace and Conflict Studies: A Reader*. Routledge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3.11.06.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김태경	82
2023.10.30.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방안	김은아	81
2023.10.16.	지속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의제	이선화	80
2023.09.25.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혜윤	79
2023.09.11.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정 훈	78
2023.09.04.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차정미	77
2023.08.28.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76
2023.08.14.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연구	박성원	75
2023.08.07.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	74
2023.07.31.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 분석	정혜윤	73
2023.07.24.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박현석	72
2023.06.26.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박성준	71
2023.06.05.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	70
2023.05.22.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69
2023.05.15.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68
2023.05.01.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정순영·김승미	67
2023.04.17.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이선화	66
2023.04.10.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65
2023.03.20.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64
2023.03.06.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63
2023.02.27.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62
2023.01.09.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61
2023.01.02.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60
2022.12.12.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59
2022.11.2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58
2022.11.14.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57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2.10.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56
2022.10.24.	일본의 청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55
2022.10.17.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54
2022.09.19.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53
2022.09.05.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우해봉	52
2022.08.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51
2022.08.08.	한국인의 분배 인식 :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50
2022.07.25.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49
2022.07.11.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48
2022.06.1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47
2022.05.30.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46
2022.05.16.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45
2022.05.02.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문지혜·황희정	44
2022.04.18.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	43
2022.04.04.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42
2022.03.2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41
2022.03.07.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40
2022.02.2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39
2022.02.07.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38
2022.01.24.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37
2022.01.10.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36
2021.12.30.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여영준	35
2021.12.23.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	34
2021.12.16.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33
2021.12.09.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32
2021.11.18.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31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1.11.04.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30
2021.1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9
2021.10.07.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8
2021.09.1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조해인·정 훈	27
2021.09.0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6
2021.08.19.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5
2021.08.05.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4
2021.07.22.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미징 이슈 도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	23
2021.07.08.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	22
2021.06.24.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2021.06.1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0
2021.05.27.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19
2021.05.13.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18
2021.04.29.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17
2021.04.15.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16
2021.04.01.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15
2021.03.18.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14
2021.03.04.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13
2021.02.18.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12
2021.01.2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11
2021.01.0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10
2020.12.24.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김유빈	9
2020.12.10.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8
2020.11.26.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7
2020.11.19.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정영훈	6
2020.11.12.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5
2020.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4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0.09.17.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3
2020.09.03.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
2020.08.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